

☎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56 / 의무법제국장 광석철[6573] / 의료광고심의팀장 윤보미[6592] / 팀원 박상아[6556] / E-mail: adkma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1431-12127호

시행일자 2026. 2. 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 조성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주의 당부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의료현장에서 이른바 ‘병의원 브로커’ 로 불리는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명의를 이용하여 비급여 할인 등 의료광고를 집행하여 환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.

3.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자, 의료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, 비의료인이 주체가 된 광고는 매체 종류나 심의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 위배 소지가 있으며, 이를 방치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역시 법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4. 이는 온라인 카페, 게시판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를 이용하더라도, 광고주체가 비의료인인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특히 제3자를 통한 소개·알선·유인 행위 및 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비용할인(본인 부담금 면제 등) 광고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 제13호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, 광고 진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최근 관련 민원 및 고소·고발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소속 회원들에게 외부 마케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

※ 참고사항 : 관련 법령

1) 의료법 제56조 (의료광고의 금지 등)

① 의료기관 개설자,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(이하 “의료인등”이라 한다)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.

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.

13.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

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

2) 의료법 제27조 (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)

③누구든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나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,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·알선·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대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 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공중보건이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